

영등포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 의원 대표발의】



2012. 6.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盧 相 沃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27호로 2012년 5월 24일 고기판 의원의 7인
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각급 학교의 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장기간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부담이 되므로 학교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원(안 별표 1(제4조제2항 관련))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장기간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납부에 부담이 되므로 학교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체육행사의 체육동호인 육성·지원의 대상 및 범위, 방법란에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하고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학교시설 이용은 교육부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학교시설 사용료는 2011년 10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됨.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을 100분의 50 ~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 ~ 100분의 80으로 확대하고 사용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청소비, 전기료, 냉난방비 등의 관리비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료 이외에 별도의 실비징수를 금지하였음.

- 사용료 인하(1시간 기준)

- 체육관 10,000원 → 6,000원
- 인조잔디 운동장 50,000원 → 40,000원

-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의 장기사용(6개월 이상)의 경우 사용료 감면 확대

- 100분의 5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80

○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 주민이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생활체육동호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마지막으로 배부된 구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람.

참 고 자 료

1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 체육, 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립학교를 말한다.
2. “일시사용”이란 학교시설을 일정 기간에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료”란 일시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대상)이 조례에 따라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시청각실
4.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5. 수영장

6. 운동장

7.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

제4조(사용허가 신청)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목적과 내용이 시설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바람직한 이용을 위해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③ 학교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용내용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재임대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용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용시간 등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학교장은 [별지 서식 1]의 신청서와 [별지 서식 2]의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 시 사용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삭제(2012.03.08)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4. 장애인 관련 단체가 사용하거나, 장애인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5. 해당 학교의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6. 평생교육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7.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호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사용료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 제6호 및 제7호는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사

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또는 제9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 : 해당 금액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준용)학교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2.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1999.8.5] [교육부령 제749호, 1999.8.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원칙)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수칙)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일몰후 이용 등의 제한)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제5조 (유지관리) ①각급학교의 장은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 (이용의 한계)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 (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49호, 199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